
안전보건 정책

Health & Safety Policy



안전보건 정책

제정: 2018.07.02

개정: 2024.06.26

I. 총칙

1. 목적

본 정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법에 따라 코스맥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안전보건 방침

코스맥스는 안전보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종사자에 쾌적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방침을 제정한다.

-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지속적 개선을 위한 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 국내 및 관련국가의 안전보건법규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이행한다.
- 사업활동 전 과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한다.
-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3. 적용범위

본 안전보건 정책은 코스맥스 본사를 비롯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전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코스맥스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고객, 협력회사 직원, 지역사회 및 주민, 국가기관 소속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적용된다. 본 정책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

4. 역할 및 책임

4-1. 최고이사결정기구

코스맥스의 대표이사는 매년 코스맥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은 이사회에 있으며, 이사회는 안전보건 관리 및 성과개선 활동 전 반을 감독한다.

4-2. 전담 조직

코스맥스는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사업보건의료 선임되지 않은 2명 이상의 인원으로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담 조직은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분기별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4-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코스맥스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은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측정 및 점검, 근로자 건강진단 등 관련 사항으로 한다.

4-4. 환경안전보건위원회

코스맥스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환경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5. 정량적 목표

본 안전보건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ISO45001 인증 사업장 비율을 100%로 확대한다.

6. 교육

코스맥스는 근로자(사무직 근로자, 판매직 근로자, 기타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과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특별안전 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7. 검토주기

코스맥스는 국내 법령과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 안전보건 정책을 최소 연 1회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내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경영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8. 상담 및 제보절차

회사와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사고 및 위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임직원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과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 내부 접수창구: 고충 처리함

- 통합 고충처리 제보 사이트: 신문고 제도(cos-114@naver.com), 통합 신고 채널(홈페이지 게시)

II. 운영지침

1.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회사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특정 기계·기구에 대하여 적절한 유해·위험 방지조치 실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된다.

1-2.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입고 및 사용하거나, 보호구를 구입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1-3. 안전검사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한다.

1-4. 작업 중지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5.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인다.

1-6.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작업장 내 화기, 중장비, 고소, 밀폐작업 등 위험작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 공사외주업체 등은 사전에 안전관리부서에 안전작업허가서를 제출하고 허가 받은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1-7. 밀폐공간 안전관리

회사는 밀폐공간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8. 운반기계 안전관리

회사 내 운행하는 모든 운반기계는 사내주행속도(실내-5km/h, 실외-10km/h)를 준수하고 주행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주행로에서만 운행한다. 회사 내 보행자는 반드시 보행로로만 통행하며, 보행 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회사 내 모든 근로자는 보행로 위 물건을 적치하면 아니된다.

1-9. 작업장 안전점검 실시

회사는 안전관리부서의 주관 하에 5S/EHS 평가활동을 진행한다. 5S/EHS 평가활동은 회사 내 실장, 팀장,

임원이 조를 이루어 월 2회 전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고 발견된 결과에 대하여 개선조치 및 월 1회 5S/EHS 평가자 회의를 실시한다.

1-10. 소방관리

안전관리부서는 매년 소방, 피난계획서를 수립하고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1-11. 작업환경측정

회사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1-12. 정밀안전진단

회사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연 1회 실시하며, 전문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함.)이 코스맥스 안전관리팀의 입회 하에 현장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한다.

1-13. 근로자 건강진단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회사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14. 물질안전보건자료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제품명,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취급주의 사항 등을 적은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둔다.

1-15. 근골격계질환 예방

회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증상 유무 등에 대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다.

2.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2-1.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회사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임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관리부서에 연락해야 한다.

2-2.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회사 내 사고발생 시 안전관리부서는 발생부서와 신속하게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2-3. 재해발생현황분석

안전관리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3. 위험성평가

3-1.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안전관리부서는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3-2.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관리부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담당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3-3.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안전관리부서는 사업장 내 모든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및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3-4. 위험성평가 주기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며 최초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시평가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등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한다.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은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3-5. 위험성평가 문서화

안전관리부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유지한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정책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 2018년 7월 02일
2. 개정 2024년 6월 26일